

신고번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106-180971호						
신고인	상호(명 칭)	이엠씨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염 은 성	사업자등록번호	458-81-00697		
	주소(사업장)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76, 503호(시흥창업센터) (전화번호 : 031-496-8534)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해당없음				
취급품목명		황산 등 5종	전체연간취급량	2.715m ³		
보관·저장 시설능력		해당없음	운반장비능력	해당없음		
종업원 수		6명	사업장 면적	38.06m ²		
취급 품목 현황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l)		비고
				월간	연간	
“뒤		쪽	참	조 “		
준수 사항	1.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을 통해 전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②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5.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사업장내에 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금지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신고						
2020 년 05 월 21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